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제정이유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및 범위(안 제3조)

⑴ 지원대상 :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 마을회관 및 경로당

⑵ 지원범위 : 가스, 전기, 보일러 관련 노후시설, 소화기 설치 등

나.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⑵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총 157백만원 정도(5년간 균분지원)

다.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기획감사실 - 5882(2018. 8. 7.)〕

라.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 - 44061(2018. 8. 8.)〕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8.27. ~ 9.17.)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계층으로서 성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7. 「치매관리법」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8. 그 밖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난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 가구
2. 성주군에 소재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소방시설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제5조(예산 확보) 군수는 기초소방시설, 전기, 가스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table>
<tr><td>접수번호</td><td colspan="2">접수일자</td><td colspan="2">처리일자</td></tr>
<tr><td rowspan="4">지원대상자</td><td>성 명
(시설명
대표자)</td><td>생년월일</td><td colspan="2">세대원수
(이용자수)</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2">전화번호(휴대폰)</td></tr>
<tr><td>대상자
구 분</td><td>☐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td><td>☐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
☐ 치매노인
☐ 마을회관 및 경로당
☐ 기타</td><td>담당공무원
확 인 란</td></tr>
<tr><td colspan="3"></td><td></td></tr>
<tr><td>지원시설</td><td colspan="4">☐ 소화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td></tr>
</table>

「성주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성주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